

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4. . .
발 의 자	이지연 의원 외 10인

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이지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: 2024. . .

발 의 자: 이지연·강승수·김민성·김재우
김정도·박교상·신용하·이상호
장미경·정지원·추은희 의원(11인)

1. 제안이유

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·18민주화운동의 당사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·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바,

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한 적용 대상자에게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숭고한 애국·애족정신을 존중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국가보훈대상자에 5·18 유공자 포함(안 제8조제1항제3호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5조

2)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나. 부서검토: 복지정책과 의견제출(붙임)

다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라. 기 타: 신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보훈예우수당 지급) ① 시 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 소를 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 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 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 급할 수 있다. 다만 어느 둘 이 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.	제8조(보훈예우수당 지급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3. 「5·18민주유공자유 및 <u>단체설립에 관한 법률</u> 제4 <u>조에</u> 해당하는 사람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국가보훈 기본법」

-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□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- 제4조(적용 대상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(이하 “5·18민주유공자”라 한다)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
1.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: 5·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·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,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

2.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: 5·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,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(이하 “장해등급”이라 한다)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
3.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: 5·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

검 토 의 건 서

부서명 : 복지정책과

조 례 명	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□ 검토 사항 ○ 근거 법령 ▪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5조 ▪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○ 검토 내용 ▪ 5·18 민주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 검토 ▪ 「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1항제3호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(신설) □ 주요 사항 ▪ 「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1항제3항(신설) ▪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(5·18민주유공자 : 사망자, 행방불명자, 부상자, 희생자) □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자를 예우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으로 5·18 민주유공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 □ 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 ○ 기대효과 : 5·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 기여 ○ 소요예산 : 연간 3,600천원 (비용추계서 미첨부) ○ 문 제 점 : 없음	

[별지 제2호서식]

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「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1항제3호
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(신설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※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 : 연평균 비용소요액 1억미만

- 산출내역 : 3명 × 100,000원 × 12개월 = 3,600,000원
※ 산출근거 : 구미시 5·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명단(대구지방보훈청-10573호 (2024.6.4))

4. 작성자 : 복지정책과 보훈선양팀 이미경 (☎480-5131)